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
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2022. 9. .

국 토 교 통 부
(녹색도시과)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시설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,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·군계획시설로서 하천점용시설을 관리계획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로 명확화(안 별표2 제1호나목)

하천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이고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하천구역과 하천구역에 설치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,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원 및 체육시설 등 도시·군계획시설도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되는 하천구역 내 시설이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로 명확히 함

나.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과 관리계획 반영시설의 경미한 사항 일치(안 별표 2 제5호)

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기존 형질변경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치 변경은 해석상 경미한 변경사항이나 규정이 미비하여, 관리계획 반영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일치

시킴으로써 명확히 함

다. 법령 문구에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명확화

- 1)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기준 중 관리계획에 반영된 “부지”라는 표현을 “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”으로 명확화(안 제29조제1항제2호다목)
- 2) 어려운 법령용어인 “내지”를 “~부터 ~까지”와 “또는”으로 구분
(안 별표 2 및 제34조제1항)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 중 “하천”을 “하천(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동 별표 제3호가목 중 “제2호 가목 내지 라목, 동 호 바목 내지 차목, 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”을 “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, 동 호 바목부터 차목까지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”로 하며, 동 별표 제4호바목 중 “제1호 내지 제3호에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하고, 동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, 국토교통부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관리계획”은 “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”로, “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”는 “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결과”로 본다.

제29조제1항제2호 다목 중 “부지”를 “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”로 한다.
제34조제1항 중 “1등급지 내지 2등급지를”을 “1등급지 또는 2등급지를”

으로 하고, 동조 동항 제1호 중 “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”를 “1등급지 또는 2등급지로서”로 하며, 동조 동항 제3호 중 “1등급지 내지 2등급지와”를 “환경평가 결과 1등급지 또는 2등급지와”로 하고, 동조 동항 제4호 중 “1등급 내지 2등급지는”을 “1등급지 또는 2등급지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경미한 변경의 보고) ① (생 략) 1. (생 략) 2. (생 략) 가·나. (생 략) 다. 관리계획에 반영된 <u>부지</u>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 치 변경. 단,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관리계획 승인 당시 관계기관 협의 결 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결과를 위배하거나,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· 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. 3·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9조(경미한 변경의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 <u>기존 토</u> <u>지형질변경 부지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4조(훼손 저감대책의 강구) ①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는 환경평가 결과 <u>3등급지 내지 5</u> <u>등급지를</u>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 에 따라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	제34조(훼손 저감대책의 강구) ① ----- ----- <u>3등급지부터 5</u> <u>등급지까지를</u> ----- ----- -----

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평가 결과 <u>1등급지 내지 2등급지</u>를 활용할 수 있다. 1. 농업적성도 <u>1등급 내지 2등급지</u>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2. (생략) 3. <u>1등급지 내지 2등급지</u>와 실제 현황이 상이한 경우. 다만, 해당 지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. 4.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, 도로 등 필수적인 선형시설 등으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심사반 심사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. 다만, 이 경우 포함되는 <u>1등급 내지 2등급지</u>는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----- -- <u>1등급지 또는 2등급지</u>를----- -----. 1. ----- <u>1등급지 또는 2등급지</u>로서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환경평가 결과 1등급지 또는 2등급지</u>와----- ----- -----.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등급지 또는 2등급지</u>는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<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개정 전후 비교>

현행	개정안
1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하천 및 운하 다·라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가. 공항구역내 공항시설중 공항시설 법시행령 제3조제1호, 제2호 가목 내지 라목, 동호 바목 내지 차목, 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 나~사. (생략) 4. (생략) 가~마. (생략) 바.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시설 사·아. (생략) 5.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, 영 제10조 제4항 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 지 아니하여도 된다.	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하천(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 아 설치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 포함 한다) ----- 다·라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생략) 가. ----- -----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, 동호 바목부터 차목까지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나~사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가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----- ----- ----- 사·아. (현행과 같음) 5.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, 국토교통부장관(개발제한구역 담 당부서)과 협의한 시설의 경미한 변 경사항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를 준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이 경우 제 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관리계획”

	은 "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 "로, "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"는 "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"로 본다.
--	---